[별첨5]

# 감 사 의 견 서

농협법 제71조 제1항 및 조합 정관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

서기 2023년 01월 27일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기

2022년(제62기) 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

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, 자본변동표의 각 사항에 대하여

감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함을 인정함.

2023년 01월 27일

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감 사 양동석

감 사 김군철